진로취 · 창업관리위원회운영규정 3-1-35

규정번호 3-1-35
제정일자 2021.5.10
최근개정 2026.9.21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취·창업팀

[규정명칭 변경 2022.6.8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 진로취·창업 분야 운영부서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취·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06.08.)

제2조(기능) 우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취·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종합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(개정 2022.06.08.,2023.06.19)

1. <삭제(2023.06.19.)>
2. 진로취·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평가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(환류)에 관한 사항(개정 2022.06.08.)
3. 진로취·창업 프로그램 우수사례 선정(개정 2022.06.08.)
4. 진로취·창업 역량 강화, 취·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(개정 2022.06.08.)
5. 진로취·창업 관련 사업 검토 및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22.06.08.)
6. 기타 진로취·창업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(개정 2022.06.08.)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진로취·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진로취·창업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22.06.08.)

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실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6인 이내의 위원을 학생지원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2.6.8.,2024.7.24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별도의 임명 절차가 생략될 경우 자동 연임된다. 다만 보직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되, 인사 변동 시 후임자가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6.9.21.)

⑤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.(개정 2023.06.19., 2026.9.21.)

제 4 조 (회의)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(개정 2023.06.19.)

② 원활한 진로취·창업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.(개정 2022.06.08.,2023.06.19)

③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 · 날인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 및 환류) 대학의 진로취·창업 교육 및 운영 실태조사, 분석자료 수집, 관련 자료 분석, 관리위원회 회의, 개선사항 도출, 차기 사업반영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.(개정 2022.06.08.)

제6조(기타)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, 제3조제4항, 제4조제1항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·제3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4항·제5항)